

도축장 HACCP 운용여부 실태조사 지침

올 7월 1일부터 도축장에 HACCP이 의무적용됨에 따라 그간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도축장으로 지정받은 업소 이외 도축장의 HACCP 시행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시·도에 제공함으로써 HACCP 시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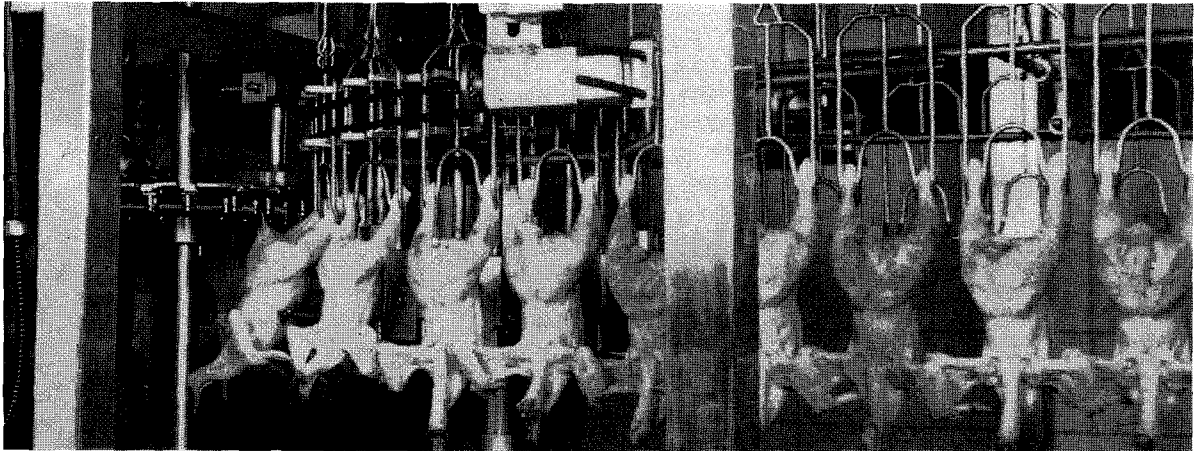
※ '03. 7. 1 기준 도축장 HACCP 적용현황 : 적용 83개소, 미적용 79개소

1. 일반사항

- 본 지침 적용대상 도축장
 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2001년 12월 31일 개정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HACCP 의무적용 대상 도축장 162개소중 2003년 7월 1일 기준 검역원 으로부터 HACCP 적용 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은 83 개소 이외의 도축장
- 도축장 HACCP 운용실태조사는 HACCP 담당검 사관이 수행
 - 시·도별 HACCP 담당검사관 지정운용 지시(위 생51574-929호('99.7.27))
 - HACCP 담당검사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지정 담당자가 동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소 속 검사관중 HACCP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지정 운용할 것
 - 시·도는 실태조사시 검역원의 기술지원이 필요 한 경우 검역원에 협조요청하고 검역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('03. 6. 27 농림부 행정지 시 참조)
 - 이 경우 시·도는 검역원에 공문으로 협조요청

2. 관련규정 및 지침

- 실태조사시 숙지하여야 할 규정
 - 위생관리기준(SSOP) 관련규정
 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8조(위생관리기준)
 - 동법시행규칙 제6조(위생관리기준등)
 - 동법시행규칙 별표 2.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
 - 동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. 영업의 종류 별 시설기준중 “도축업 시설기준”
 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관련규정
 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(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)
 - 동법시행규칙 제7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등)
 -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농림부고시 제 2002-43호; '02.9.17)
- 실태조사시 참고하여야 할 지침 또는 매뉴얼
 -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매 뉴얼(1999년 발행)
 -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작성지침



- 도축장 HACCP 계획 작성지침
 - 도축장 HACCP 검증지침
 - 정부위생당국 HACCP 감독지침
 - 소·돼지 및 닭 도축장 HACCP 일반모델 등
 -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작성지침
 - 시·도(농림부 위생51575-556호(99.05.12))
- 및 유관기관·단체에 공문으로 송부
- HACCP 미시행도축장 행정처분 지침
 - 시·도(농림부 위생51574-225호(03.04.11))
- 에 공문으로 송부

3. 실태조사시 유의사항

가. 실태조사 일반사항

■ 조사절차

- HACCP 운용여부 실태조사는 별첨 2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것
 - 동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능하면 대상 도축장의 HACCP 관리기준서 등 관련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 후 조사할 것
- HACCP 담당 검사관은 현지 실태조사시 반드시

당해 작업장의 영업자를 면담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을 주지시키고, 동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것

- HACCP 운용에 있어 영업자의 의지는 관건이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

■ 조사대상 및 조치사항

- ① 시설기준 : 도축장이 도축장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
 -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도축장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
 - 축산물 HACCP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, 도축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중 "2. 도축장 시설관리"에 의거 점검 실시
 - ⇒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
- ② 위생관리기준(SSOP)
 - 법 제8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업의 영업자가 "자체위생관리기준"을 작성·운용하고 있는지 확인
 -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여부
 -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법시행규칙 "별표 2,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"에 따라 작업 개시

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육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었는지 확인

- 영업자가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고,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6월간 보관하는지 확인

⇒ i)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미작성 또는 미운용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

ii)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이 미흡한 경우 영업자에게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 권고

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

- 법 제9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"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"을 작성·운용하고 있는지 확인

-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여부

-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세부내용은 축산물 HACCP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"HACCP 관리기준서"에 부합여부 확인

- 동 고시 제5조 관련 선행요건프로그램 작성·운용 여부, 제8조 관련 기록관리 여부 중점 확인

⇒ i)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작성 또는 미운용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

ii)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이 미흡한 경우 상기 고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영업자에게 보완 지시

나. 실태조사 세부평가기준

- 기본적으로 축산물HACCP고시 별지 제2호 서식 "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실시상황평가표"에 의거 실시하되, 도축장의 특수상황을 반영

- 상기 서식에 의한 도축장 HACCP 실시상황평가 시에는 별첨의 "도축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" 참조

- 단, 도축장별 HACCP 운용상황은 각 도축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므로 HACCP 담당 검사관은 작업장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평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

4. 실태조사 후속조치

■ HACCP 적용작업장

- 시·도는 실태조사결과 HACCP 적용 도축장으로 인정되는 도축장의 영업자가 이를 공식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민원편의 도모차원에서 이를 확인해 줄 것

- 가능한 모든 확인도축장에 확인서 발급

- 적용도축장 확인서는 가능하면 별첨 양식에 준하여 발급

- 시·도는 확인서 발급시 동 내역을 농림부 및 검역원에 보고(통보)

- HACCP 적용 식육가공품의 원료식육은 HACCP 적용도축장에서만 유래하여야 하므로 HACCP 적용도축장 내역 필요

- 검역원은 도축장 HACCP 운용현황을 매주 갱신하고 농림부 보고 및 동 세부내역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

■ HACCP 운용여부 실태조사후 미적용 확인 도축장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·제27조·제28조, 동 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

- 세부행정처분사항은 "HACCP 미시행도축장 행정처분 지침"에 의거 실시